

# 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40 증권투자자신탁[채권혼합]

□ 변경 사항 : ①채권 운용전문인력 변경(신흥섭→ 전춘봉)

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④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⑤반기 기준으로 갱신

□ 효력발생일 : 2020. 7. 22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 준으로 기재	-	<u>2020. 5. 31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 익률)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0.4.25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운용인력 변경	<u>채권 책임운용역</u> : 신흥섭	<u>채권 책임운용역</u> : 전춘봉
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9. 11. 30. 기준</u>	<u>2020. 6. 30. 기준</u>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해당 클래스만 기재	-	<u>해당 클래스만 기재 및 오 기 정정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채권 책임운용인력 변경	-	<u>2020.07.22: 채권 책임운 용인력 변경(전춘봉)</u>
5. 운용전문인력	운용인력 변경	<u>채권 책임운용역</u> : 신흥섭	<u>채권 책임운용역</u> : 전춘봉
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9. 11. 30. 기준</u>	<u>2020. 6. 30. 기준</u>

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 력]	채권 모투자신탁 운용인 력 변경  최근 기준으로 기재	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 권] 책임운용역 : <u>신흥섭</u>  <u>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 권] : 양진모</u>	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 권] 책임운용역 : <u>전춘봉</u>  <u>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 권] : 전춘봉</u>
		2019. 11. 30. 기준	2020. 6. 30. 기준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	운용인력 변경  최근 기준으로 기재	채권 책임운용역 : <u>신흥섭</u>  2019. 11. 30. 기준	채권 책임운용역 : <u>전춘봉</u>  2020. 6. 30. 기준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운용인력 변경	-	<u>[채권 책임운용역]</u> <u>2020.01.09~2020.07.21</u> : <u>신흥섭</u> <u>2020.07.22~현재 : 전춘</u> <u>봉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	해당 클래스만 기재	-	<u>해당 클래스만 기재 및 오</u> <u>기 정정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 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 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 준으로 기재	2020.1.31 기준	2020. 5. 31. 기준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4)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<u>납입요건</u> <u>가입기간 5년 이상, 연</u> <u>1,800만원 한도</u> <u>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</u> <u>입액 포함)</u>	<u>납입요건</u> <u>가입기간 5년 이상, <u>가목</u></u> <u>및 <u>나목</u>의 금액을 합한 <u>금</u></u> <u>액 이내</u> <u>가. 연 1,800만원(퇴직연</u> <u>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</u> <u>함)</u> <u>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 91</u> <u>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</u> <u>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</u>

---

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 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 
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 
“전환금액”) 중 납입한  
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  
금계좌 납입액

공제제도

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  
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  
는 금액을 세액공제  
- 종합소득금액 4,000 만  
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 
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  
만 있는 경우) 일 경우  
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 
세액공제  
-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 
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
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  
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간  
저축금액 중 300 만원 한  
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  
액을 세액공제  
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 
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 
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  
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  
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  
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  
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  
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 
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 
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

공제제도

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 
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 참  
조

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0.4.25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0.4.25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0.4.25. 기준</u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0. 11. 30. 기준	<u>2020. 6. 30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<u>한국예탁결제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
나. 주요 업무			
(3) 업무위탁			
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			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<u>전자등록기관</u>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
가. 수익자총회 등			
(3)수익자총회 결의사항			



---

있습니다.

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 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〈신설〉

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 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- 다만,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

---

야 합

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증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

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
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,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

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

1. 대상금액 :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함

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

---

			<b>합</b> -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 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<u>한국예탁원</u>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<u>한국예탁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12%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기한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